

제 6 장 서비스 이용 계약 및 해지

제 22조(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간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 23조(서비스이용 계약)

계약은 수급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한다.

- | | |
|-------------------|---------------------------|
| 1) 계약 기간 | 2) 계약목적 |
| 3) 서비스 내용 및 월 이용료 | 4)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
| 5) 계약의 해지 | 6) 기타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 필요사항 |

제 24조(서비스이용 계약기간)

계약 시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서비스이용 계약 기간을 정한다.

- ① 기관과 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진행한다.
- ② 계약 기간은 수급자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하고, 1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25조(서비스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산정한다.

- ① 서비스 제공 시간은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에서 정한 월 사용시간 및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②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은 최대 4시간(1,2등급), 최대 3시간(3,4,5등급)까지 사용 가능하며 등급과 상관없이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된다.
- ③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이동식욕조를 활용하여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로 산정한다.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에 따라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 ④ 수급자 구분에 따라 한도액 기준하여 서비스 사용 총 비용의 15%~0%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 : 6%, 9%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근무시간 외 수혜자의 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비용은 100% 수급자(보호자) 본인 부담으로 지급한다. (예: 병원 동행 시 교통비 등)

제 2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① 수급자 및 보호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 시 제공하는 개인별요양이용계획서에서 준하는 서비스를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2) 수급자는 존엄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3)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4) 수급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받음에 있어 각호 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 1) 수급자 관련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사항 변경 시 반드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 2)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3) 수급자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 5) 수급자 외 가족의 관련 가사 서비스 등 계약 외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6) 수급자는 서비스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27조(계약해지)

계약 기간 중 각호에 따른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수급자가 타 기관으로 서비스 변경 요청 또는 사망하였을 때
- ② 수급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 ③ 수급자로 인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을 때
- ④ 고의적으로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 7장 서비스 내용 및 이용료

제 28조(서비스내용)

① 방문요양

-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목욕·배설·식사·이동 도움, 청결 및 위생관리, 착·탈의, 체위 변경, 신체 기능의 유지·증진 등
- 2)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 정돈 등
- 3)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 업무대행 등
- 4)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및 격려, 여가 활동 등
- 5)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등

② 방문목욕

- 1) 요양보호사 2명이 이동식 욕조 장비를 갖추어 대상자 가정 내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2) 대상자의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후 주변 정리 및 간단한 상태 관찰하는 행위 등을 포함

③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서비스

- 1)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 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2) 치매 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1)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물적 자원연계 사업
- 2)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 3) 지역사회 내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사업

제 29조(서비스비용)

서비스비용은 당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서비스 수가가 정해진다.

○ 등급별한도(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공단 지원금	1,960,440	1,770,890	1,262,850	1,165,010	1,000,450
본인 부담금	345,960	312,510	222,850	205,590	176,550
■ 본인 부담금 : 일반 15% ■ 경감 대상자 : 6%, 9% ■ 기초수급자대상자 : 0%					

○ 방문요양 시간별수가

* 사용가능시간 : 1,2등급 : 4시간(240분) / 3,4,5등급 : 3시간(180분)까지 가능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으로 1,2등급 1일 270분~480분, 3,4등급 1일 210분~480분까지 가능)

시간	시간별 수가	공단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
		85%	일반(15%)	
30분	16,940	14,400	2,540	
60분	24,580	20,900	3,680	
90분	33,120	28,160	4,960	
120분	42,160	35,840	6,320	
150분	49,160	41,790	7,370	
180분	55,350	47,050	8,300	3~5등급
210분	61,670	52,420	9,250	
240분	68,030	57,830	10,200	1~2등급

○ 방문목욕 수가(1회)

서비스시간	이용금액(원)	공단지원금(85%)	본인부담금(15%)
60분	48,690	40,520	7,150

제 30조(본인부담금)

- ① 수급자 구분에 따라 한도액 기준하여 서비스 사용 총비용의 15%~0% 본인 부담금을 부담한다.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 : 6%, 9%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② 서비스비용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계약 후 매월 지정된 계좌로 현금 수납으로 한다.

제 31조(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서비스 내용에 따라 서비스이용 비용이 결정되며 결정된 서비스 중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 ① 수급자의 등급 또는 경감으로 자격 변동이 되었을 경우
- ②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동되었을 경우
-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 ④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32조(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 ①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기관(요양보호사 포함)의 미흡 또는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계약 기간 및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추가로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 33조(변경절차)

- ① 수급자는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을 통해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 ② 수급자자 또는 보호자(대리인)은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수급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본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 ③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 사유가 발생 시에는 수급자가 등급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